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(개정 2017. 3.21. 시행 2017.9.2.)에서 위임하고 있는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근거 조항 수정(안 제1조)

○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7473('17 .8.17.)]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7. 9. 7. ~ '17. 9.27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6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을 “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·면 협의체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읍·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·면 실정에 맞게 읍·면 협의체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읍면”을 “읍·면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협의체 :”를 “협의체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읍면”을 “읍·면”으로, “실무분과 :”를 “실무분과: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각 협의체 운영”을 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6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읍・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----------. ----------
제3조(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제4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읍・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・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・면 협의체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. ② 그 밖에 읍・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・면 실정에 맞게 읍・면 협의체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생 략)	제4조의2 (현행 제5조와 같음)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	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----------읍·면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-----위촉 해제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9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	제9조(회의 등) ①----------.
1. 협의체 : 연 4회 이상	1. 협의체: ----------
2. 실무협의체, 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: 연 6회 이상	2. --------읍·면-------실무분과: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	제13조(운영세칙) ----------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----------.